

감 사 원

통보·통보(시정완료)

제 목 터널 굴착용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부과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세인 취득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⁹⁷⁾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에 1천분의 30을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하고,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1천분의 20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 따르면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수평으로 천공할 수 있는 장치인 터널보링머신은 등록⁹⁸⁾대상 건설기계로 되어 있다.

97)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등록대상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 위임되어 있고, 이외의 기계·장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각 구청장에 위임

9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건설기계 등록은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 및 제40조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건설기계인 터널보링머신에 대해서 취득 당시 가액에 1천분의 30을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부과·징수해야 하며, 터널보링머신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AG, AH)는 [표]와 같이 2016. 3. 22. 및 2016. 7.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건설기계인 터널보링머신 2기(취득금액 계 약 280억 원)를 취득⁹⁹⁾하고,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 사용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1천분의 20의 세율로 취득세 336,308,700원을 과소 신고 하였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이를 그대로 두어 취득세 등 419,719,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었으며, ●●건설주식회사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건설기계인 터널보링머신을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은 데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본거지 관할 지자체에 하도록 규정

99) 위 터널보링머신은 ●●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ㄴ 하저터널 공사(2016월 착공)’에 사용되고 있음

[표] 터널보링머신 취득세 등 과소 신고 현황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자	수리일자	품명 (모델규격)	수량	추징세액			건설기계 등록여부
					소계	본세	가산세	
-	2016. 3. 22.	2016. 3. 22.	TUNNELLING MACHINERY	1	214,575,260	169,325,780	45,249,480	미등록
-	2016. 7. 5.	2016. 7. 5.	TUNNELLING MACHINERY	1	206,144,070	166,982,920	38,161,150	미등록
계				2	419,719,330	336,308,700	83,410,630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관계기관 의견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취득세 등 419,719,330원을 2018. 5. 16. 부과고지하였으며, 미등록 건설기계에 대한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 ① 등록대상 건설기계를 미등록하고 사용한 데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주식회사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통보)
- ②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2018. 5. 16. 취득세 등 419,719,330원을 부과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